

키움캐피탈 계좌운용규칙

(주)핀드_키움증권

시행일 : 2025.10.20.

1. 일반적인 매매 및 금융거래 규칙

매매시간		■ 매매시간 - 08:30 ~ 15:30 (정상거래, 매수·매도 가능) - 08:30 ~ 08:40, 15:30 ~ 16:00 (매도만 가능) ※ 시간외 단일가 매매 및 예약매매 불가 ■ 매매유형 : 지정가, 시장가 주문만 가능 - 조건부지정가, 최유리지정가, IOK, FOK, 예약매매, 스탑로스 등 특수주문 불가 ■ 한국거래소 KRX 주문만 가능. 대체거래소 NXT 및 SOR 주문 불가			
금융 거래 시간	대출(입금)	08:30 ~ 16:30 까지 (대출가능시간)			
	이자(출금)	08:30 ~ 09:00, 16:00 ~ 16:30 1일 2회 (전액출금방식 : 이자출금액 부족시 미인출)			
	부분상환/중도해지(출금)	08:30 ~ 16:30 까지 (당사 홈페이지에서 상환신청)			
	만기상환(해지)(출금)	16:00 부터 (전액출금방식, 부족 시 상환 불가)			
	로스컷(출금)	16:00 부터 (부분출금 가능)			
거래가능종목		KOSPI, KOSDAQ 상장종목 중 일반종목, ETF (일부종목 거래불가)			
매매가능매체		HTS, MTS, ARS, 고객센터 등 주문가능 * 증권사 사정에 따라 매매가능매체는 제한 또는 변동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			
거래유형		100% 현금거래에 한함. (※신용거래, 공매도, 미수거래 불가)			
매매거래금지종목		매수	보유	보유금지(반대매매)시점	비고
① 관리종목		불가	불가	편입 후 재거래 즉시	
② 거래정지예정종목		불가	불가	거래정지 전일	
③ 권리락종목 (배당락 제외)		불가	불가	권리락 전일(기준일2일전)	
④ 감자·합병·액면분할·병합종목 등		불가	불가	기준일 2일전(거래정지전일)	
⑤ 투자경고/위험종목 · 단기과열 종목		불가	-		▶ 일별 조회
⑥ 액면가 50%이하 종목		불가	-		▶ 전일 기준
⑦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종목		불가	-		▶ 전일 기준
⑧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 거래종목		불가	-		▶ 일별 조회
⑨ 신규 상장종목(기업공개)		불가	-		▶ 상장일에 한함
⑩ 최근7영업일간 주가하락 50%이상 종목		불가	-		▶ 일별 조회
⑪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요구 종목		불가	-		▶ 이유없는 시세급변만 해당
⑫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		불가	-		
⑬ 5일 평균거래량 1천주미만 종목		불가	-		
⑭ 권리발생 예정종목		불가			▶ 반대매매 예정일 5일전부터
⑮ 정리매매종목		불가	불가	정리매매 시작일	
⑯ 상장폐지실질심사 종목 등		불가			▶ 지정 즉시

⑰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재 전 예납조치를 취한 종목	불가			▶ 일별 조회
⑱ 금융사 지정종목 (RMS시스템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종목)	불가	-		▶ 지정후 즉시

■ 대출신청 전에, 보유불가종목 기보유시, 보유불가종목 매도 후 대출신청 가능합니다. ■ 대출실행 후 주식 입고는 키움증권 계좌(동일인 명의)내 대체 입고만 가능하며, 타 증권사 입고 및 주식출고는 불가합니다. 단, 주식 입고시 매수불가종목, 보유불가종목, 현물은 입고 불가하며, 담보율 130% 초과분에 한해, 매수금지종목 · 보유금지종목 · 보유금지예정종목 키움증권계좌(동일인 명의) 내 주식 출고 가능합니다. ☞ 입고주식이 보유불가종목에 해당될 경우, 해당종목에 대해 자동반대매매가 실행되므로 입고 전에 HTS 또는 전화문의를 통해 보유불가종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☞ 대출계좌에서 거래 가능한 일반종목이 아닌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종목이 입고되는 경우,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종목은 매매 불가합니다. ■ 포트폴리오 제한 : 동일종목 최대 투자비율은 100% 이내로 제한됩니다. (일부 종목 제외, 실시간 증권계좌 가치 반영) ■ 동일종목 매수제한 : 특정종목(시가총액 1,000억원 미만)에 대한 편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이 매입할 수 있는 주식 수량을 해당종목 총상장주식의 3%이하로 제한됩니다. ■ 유동성 제한 : 종목별 5일 평균거래량의 30%이상 매수 금지됩니다. ■ 금융사지정(시스템제한) 매수불가종목 : 위험관리시스템(RMS)시스템에서 고객의 투자안전을 위해 매수금지로 설정한 종목 ■ 대출계좌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됩니다. ■ 정리매매종목 지정 시 최저 호가로 반대매매가 실행됩니다. ■ 고객은 고객 투자자산의 보호 및 건전한 증권거래를 위하여 본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, 반대매매 등의 조치가 실행됨에 주의해야 합니다.				
---	--	--	--	--

2. 자동반대매매 규칙

자동반대매매 실행하는 경우		자동반대매매 시기
① 정규시장 종가기준 담보비율이 120%미만 도달 후 익일 오전 08시 30분까지 담보비율이 120%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☞ 장 마감 이후 이자출금 등의 사유로 담보비율이 120%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람		▶ 오전 동시호가부터 반대매매
② 관리종목		▶ 관리종목으로 편입 후 재거래 즉시
③ 권리락 등 주권의 변동이 생기는 종목을 지정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		▶ 권리락 전일(기준일 2일전) 오전 동시호가 부터
④ 보유주식 거래정지로 편입예정 종목		▶ 거래정지 전일 오전 동시호가 부터
⑤ 주식병합 · 주식분할 · 감자 · 합병종목을 기준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		▶ 기준일 2일전(거래정지 전일) 오전 동시호가부터
⑥ 대출 해지사유(만기경과/기한의이익상실) 발생 후,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		▶ 대출 해지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동시호가부터
⑦ 정리매매종목을 보유한 경우		▶ 정리매매 시작일
증권계좌 담보비율	■ 증권계좌 담보비율 = (장중 실시간) 계좌담보평가액 ÷ 대출원금 ① 계좌담보평가액 = 주식잔고평가금액(장중 실시간 보유주식수 × 현재가) + 예수금 ② 예수금 : D+2일 예수금 (대출원금 발생시, 예수금에 포함됨) ☞ 대출신청 전에 매수금지종목을 기보유한 경우, 최초 대출시점의 담보평가액에서 제외 ☞ 대출계좌에서 거래 가능한 일반종목이 아닌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종목이 입고되는 경우,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종목은 담보계좌평가에서 제외됨.	
현금인출	■ 담보비율 130% 초과분에 한하여 고객 현금인출 가능	

	※ 매수금지, 보유불가 종목 보유 시 해당종목을 제외한 담보평가금액이 130% 초과 시 출금 가능 ※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발생으로 인한 거래정지종목 보유 시 해당종목을 제외한 담보평가금액이 130% 초과시 출금가능 ※ 담보비율 130% 초과분에 한해, 매수금지종목/보유금지종목/보유금지에정종목을 키움증권계좌(동일인 명의)내 주식 출고 가능 ■ 증권제휴카드 사용 불가(연계은행카드 통한 입출금 가능) ■ 증권계좌 현금 입출금 가능 시간 : 07:00~23:30
로스컷 (반대매매)	■ 로스컷(반대매매)이 발생하는 경우 ① 정규시장 종가기준 증권계좌 담보비율이 120% 미만 도달 후 익일 오전 08시 30분까지 120%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☞ 오전 동시호가로 대출원금 상환금액 수량만큼 로스컷(반대매매) 실행 ☞ 종가기준 증권계좌 담보비율이 120% 이상 되더라도 장 마감 이후 이자출금 등의 사유로 담보비율이 120%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로스컷(반대매매)이 실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② 대출 해지사유(만기경과/기한이익상실) 발생 후,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☞ 대출 해지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오전 동시호가 자동반대매매 실행 ■ 로스컷(반대매매) 순서 : 반대매매 수량은 반대매매 실행일 하한가 기준으로 계산됨. ① 매수금지종목 ② 종목코드(번호)가 빠른 종목 단, 로스컷 실행 후 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(하한가 종목 또는 거래정지종목), 원금상환 부족분만큼 다음종목 반대매매 실행 (5분간격 재실행) ■ 로스컷(반대매매)후 출금 : 원금/이자 일괄청구방식, 부분출금 가능 ☞ 로스컷으로 대출약정 해지 시 대출원리금을 초과하는 손실금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만큼 입금해 주셔야 하며, 손실금액 미입금시에는 입금일까지 연체이자율이 계속 적용됩니다. ■ 로스컷(반대매매)이 실행된 계좌는 계약해지시까지 매매가 제한되고, 대출원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이 확보되지 않은 계좌에 주식(현물)이 입고되는 경우, 입고된 주식에 대한 추가 로스컷이 실행되므로 로스컷 이후에는 주식(현물)입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 ■ 로스컷(반대매매) 경고 휴대폰 안내문자(SMS) 발송 ① 실시간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+ 3%, 로스컷비율 + 6% 도달시 ② 당일 16시 00분 : 담보비율이 120% 미만인 고객 전체 ③ 로스컷 실행일 07시 30분 : 로스컷 대상고객 전체 ④ 로스컷 실행 즉시 단, 장중 경고 SMS의 경우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SMS 발송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 ■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고객은 이자연체, 만기연장, 반대매매(로스컷 반대매매 및 보유불가종목 반대매매 등)등의 중요한 휴대폰 안내문자(SMS) 수신을 위하여 반드시 당사에 휴대폰번호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, 휴대폰 번호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휴대폰 안내문자(SMS) 수신에 불가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사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■ 휴대폰 통신사에 스팸등록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문자 수신에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. 스팸 등록으로 인한 반대매매 등 중요 안내 문자 미수신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 책임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대출해지 유예기간	■ 로스컷(반대매매) 이후, “대출해지 유예기간제도” 적용 ① 로스컷 실행 후, 영업일 기준 5일 이내(15:30까지) 현금입금 또는 일부상환 등으로 담보비율이 120% 이상 시 재거래 가능 ② 5영업일 경과시, 대출해지 및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조치함. (5영업일 15:30까지 입금가능) ③ 대출 해지사유(만기경과/기한이익상실) 발생시에는 미적용함. ④ 휴대폰 안내문자(SMS) 발송(증권위험관리시스템) : “유예기간내 입금요청 / 대출해지 경고 SMS” ■ “대출해지 유예기간” 중 고객이 직접 대출금 상환 가능 (홈페이지 이용)

대출한도 설정금액	■ 최대 대출한도금액 내에서 고객이 직접 설정함. ☞ 개인별 주식매입자금대출 합계금액 6억원을 초과하지 못함. (계좌별 3억) ■ 최대 대출한도설정금액 내에서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일부상환과 추가대출이 가능함. ① 대출한도설정금액 내 추가대출 가능금액 $= (\text{계좌평가금액} - \text{추가대출 전 대출잔액}) \times \text{대출한도(비율)} - \text{추가대출 전 대출잔액}$ ② 보유불가종목 보유 시 대출 불가 ③ 추가대출시 계좌평가금액은 매수불가종목을 제외하고 평가되므로 HTS에서 보여지는 담보율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④ 기존대출금과 추가대출금의 합계액이 대출한도설정금액 이하여야 함. ■ 대출금 상환시에 최소금액(10,000원 이상)을 유지하셔야 대출한도가 유지되오니, 대출한도를 유지하고자 하실 경우 최소 대출금액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
대출한도 증액/감액	■ 대출한도 설정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① 신규약정 체결조건 ① ~ ⑨항을 충족하는 고객 ② 대출한도 증액가능금액 산정방식 $= (\text{계좌평가금액} - \text{대출잔액}) \times \text{대출한도(비율)} - \text{증액 전 대출한도설정금액}$ ☞ 계좌평가금액 = 총 계좌평가금액 - 매수불가종목 평가액 ③ 대출금리 : 최초 대출금리와 동일 (단, 만기 연장 시 연장시점의 대출금리 적용) ④ 대출기간 : 최초 대출 만기일자와 동일 ⑤ 기타조건 : 연체금리, 중도상환수수료, 대출한도는 신규대출 조건과 동일, 인지세 등 수수료금액을 계좌 내 인출 가능한 현금으로 보유해야 함 ※ 한도증액 시 고객별 총부채상환비율(DSR) 적용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■ 대출한도 설정금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- 감액 전 대출한도 설정금액 미만, 대출잔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도 변경 가능 ※ 추후 대출한도 설정금액을 증액하고자 할 경우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음
대출한도 내 추가대출	■ 추가대출신청 : 스타론 전용 웹페이지에서 신청 ① 담보평가액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(신규약정체결조건 충족 시) ② 추가대출가능금액 = $(\text{계좌평가금액} - \text{추가대출 전 대출잔액}) \times \text{대출가능비율} - \text{추가대출 전 대출잔액}$ ■ 추가대출조건 :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기존대출금과 추가대출금의 합계액이 대출한도설정금액 이하 ② 계좌 내 보유불가종목 미보유 ※ 단, 추가대출가능금액 산정 시 매수금지종목, 거래불가종목은 계좌평가금액에서 제외됩니다.
이자납입	■ 이자 납입일 - 대출실행일 익월부터 매 1개월 마다 대출실행일자에 이자납입 이자납입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, 이자납입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 (증액 및 추가대출/일부상환시 납입일 변경되지 않습니다.) ■ 이자 납입 방법 - 이자 납입일에 고객님의 증권계좌에서 자동 출금 - 증권계좌의 출금가능예수금이 이자금액 미만인 경우 미인출 ■ 출금 방식 - 이자출금액 부족, 사고신고등록,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121% 미만, 이자 출금 후 담보율이 고객님의 설정한 로스컷비율 미만이 되는 경우 이자 출금이 되지 않으며 연체처리됩니다. (이자출금에 따른 로스컷 방지)
일부상환	■ 일부상환신청 : 스타론 전용 웹페이지에서 신청 ■ 일부상환조건 :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일부상환 가능 ① 계좌 내 일부상환금액 (대출원금 및 이자)을 인출 가능한 현금으로 보유 ② 일부상환 후 담보비율이 상승하는 경우

연장	■ 연장신청 : 최초 대출신청 시 자동만기연장 신청서 작성 ■ 연장조건 : 하기 연장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, 자동연장 가능 ① 신규약정체결조건 ① ~ ⑨항 해당 고객 ② 최초 대출신청 시 자동만기연장 신청 고객 ③ 증권계좌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122% 이상인 고객 ④ 증권계좌 내에 만기 해당월 이자를 현금으로 보유한 고객 ■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, 익일 만기일 처리 (만기일에 따라 이자납입일 변경될 수 있음) ■ 당월이자 전액출금 방식 : 인출금액 부족 시 연장불가 ■ 연장 시 대출금리는 회사 및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■ 연장 시 유의사항 ※ 연장조건 미충족 시, 자동반대매매 실시 후 강제 해지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. ※ 강제 해지가 실행되는 경우, 계약해지 시까지 증권계좌의 매매가 제한되고, 상황이 완료되기 전 주식이 입고되는 경우, 해당 주식이 반대매매 처리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상황시까지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.
해지	■ 해지 사유 ① 약정만기일 도래 : 연장조건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고객 중도해지 요청 또는 이자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 상실한 경우 ③ 여신거래기본약관 제5조(자금의 용도 및 사용)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한 경우: 주식매입자금용도 사용 준수 ④ 로스컷비율 미만으로 반대매매 실행 후 5영업일 15:30까지 담보비율을 로스컷비율 이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■ 대출해지/원금상환과 동시에 스타론 서비스 이용약정 및 증권계좌질권설정 자동해지 ■ 해지된 증권계좌로 재대출 희망할 경우, 질권재설정 후 신청 ■ 담보처분 후 고객의 미상환대출금 발생시에 ㈜핀드가 이를 대위변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㈜핀드는 고객님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함
기타	■ 연락처제공의무 - 고객은 스타론 계좌운용을 위한 중요정보(담보비율, 반대매매 안내, 이자연체, 만기연장, 변경사항 안내 등)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기 위하여, 항상 최신의 연락처 정보(휴대폰번호 필수)를 금융기관(대출여신기관 및 증권사)에 제공하여야 함 ① 약관 등의 변경 및 대출에 대한 공지사항이 있을 시, 고객이 대출여신기관 및 증권사에 최종으로 제공한 휴대폰 번호를 통한 문자메세지(SMS, MMS, LMS 등)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지됨 ② 대출여신기관 및 증권사에 등록된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내문자 미수신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(이자연체, 반대매매발생 등)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므로,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대출여신기관 및 증권사로 연락처 변경 요청 ③ 대출여신기관 및 증권사에 담보를 관리 등을 위한 적절한 연락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, 대출, 연장, 주식 신규매수, 인출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■ 대출이용제한 - 금융투자협회의 [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]에 의하여, 피싱/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계좌주가 보유한 계좌는 스타론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.(대출/연장/주식신규매수/인출거래제한) - 고객은 고객 투자자산의 보호 및 건전한 증권거래를 위하여 본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함.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, 일반적인 스타론 이용목적에 위반한 경우 반대매매 및 계좌강제해지 등의 조치가 실행될 수 있음. [스타론 이용목적 위반 예시] ① 타인명의를 이용한 계좌운용 ② 복수계좌를 이용한 대규모 담보대출 ③ 기타 시세조정을 위한 대출이용이 의심되는 경우

※ 위 계좌운용규칙은 관련법규 및 시장상황, 및 거래증권사 운영기준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